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 . .<br>(제 회) |      |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제출자    | 국무총리<br>(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 제출 연월일 | 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최근 개인 간 거래(C2C)의 급속한 성장 등 디지털 거래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바, 온라인 플랫폼 상 개인 간 거래 시 개인판매자의 정보 확인·제공 의무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신설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12호, 2026. 1. 20. 공포, 2026. 7. 21. 등 시행)됨에 따라,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신판매업자의 폐업 신고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안 제25조의3 신설)

-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 범위를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로 한정하되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보유한 신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는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안 제25조의4 신설)

- 1)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를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공정위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로 함
- 2)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은 지체 없이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첫 화면에 공개하도록 함.
- 3)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 ①매출액, ②소비자 규모, ③국내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일반 현황, 주주 및 임원 구성, 전자상거래 업무, ④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함.

다. 사용후기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공개의 내용 및 방법(안 제27조의3 신설)

- 1) 사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사용후기 ①작성 권한이 있는 자(구매자, 실 사용자 등), ②게시기간, ③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④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를 사이버몰을 통하여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다만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 연결 화면에서 알릴 수 있도록 함.

라.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위탁규정 마련(안 제34조의2 신설)

- 1)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이행 관련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함.

마. 임시중지명령 조치내용 및 발동요건 구체화(안 제34조의3 등 개정)

- 1) 임시중지명령의 조치내용에 해당 행위의 일시중지를 추가하고 발동요건 중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됨이 명백한 경우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바. 신설 의무 위반행위 영업정지 처분기준 마련(안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1] 개정)

- 1) 영업정지 대상에 신설된 의무 위반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함.

사. 반복 범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안 제38조제2항 관련 [별표2] 개정)

- 1)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되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함

아.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및 부과대상 행위 추가(안 제42조 관련 [별표3] 개정)

- 1) 과태료 부과대상에 플랫폼의 의무 불이행, 대금환급의무 위반 행위를 추가하고 과태료 수준을 2배 상향하여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자.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과정 불편 해소(안 제17조 개정)

- 1)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신고서 서식에  
그 사유를 적도록 단서 규정 정비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3. 9. ~ 4. 18.)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 3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제17조 단서 중 “신고증 또는 사유서(신고증”을 “신고증을 첨부하되, 신고증”으로,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야”를 “경우에는 총리령을 정하는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이란”을 “신원정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5조의3, 제25조의4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법 제20조의4제1항에서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란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정

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3호의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주소는 제외한다.

1.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2. 해당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제25조의4(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고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지체없이 법 제20조의5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의 첫 화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의5제6항에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매출액
2. 소비자 규모
3. 법 제20조의5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일반 현황, 주주 및 임원 구성, 해당 법인이 수행하는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 업무
4. 그 밖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의3(사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 등)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용후기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알려야한다. 다만, 해당 첫 화면에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서 알릴 수 있다.

1. 작성 권한이 있는 자
2. 게시기간
3.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 4.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를 각각 제34조의3부터 제34조의5까지로 하고,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동회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의 동회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업무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한다.

제34조의3(중전의 제34조의2)제1항 중 “법 제32조의2제1항”을 “법 제32조의4제1항”으로, “전자상거래나”를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해당 행위의 중지, 전자상거래 또는”으로,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을 “일부의 일시 중지(이하 “임시중지”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의2제2항”을 “법 제32조의4제2항”으로 한다.

② 법 제3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존 판례나 심결례(審決例)에 비추어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금지

행위 유형과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하다고 명백하게 판단되는 경우 제34조의4(중전의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중전의 제34조의3)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의2제3항”을 각각 “법 제32조의4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일시 중지”를 각각 “임시중지”로 한다.

제34조의5(중전의 제34조의4) 중 “법 제32조의2제4항”을 “법 제32조의4 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예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
| 커. 법 제20조의4를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 제4항 | 영업정지<br>3개월 | 영업정지<br>6개월 | 영업정지<br>12개월 |
| 터.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 제4항 | 영업정지<br>3개월 | 영업정지<br>6개월 | 영업정지<br>12개월 |
| 퍼. 제2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 법 제32조 제4항 | 영업정지<br>3개월 | 영업정지<br>6개월 | 영업정지<br>12개월 |
| 허. 제2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 제4항 | 영업정지<br>3개월 | 영업정지<br>6개월 | 영업정지<br>12개월 |
| 고. 제20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 제4항 | 영업정지<br>3개월 | 영업정지<br>6개월 | 영업정지<br>12개월 |

별표 1 제2호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
| 로. 제21조의4제1항 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 제4항 | 영업정지<br>3개월 | 영업정지<br>6개월 | 영업정지<br>12개월 |
|---------------------------------------------------------------|------------|-------------|-------------|--------------|

별표 1 제2호두목(중전의 코목) 위반행위란 두목 중 “법 제32조의2제2

항”을 “법 제32조의4제2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50”을 “100”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제1호   | 200    | 400   | 1,000    |
| 나. 법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3항제1호   | 400    | 1,000 | 2,000    |
| 다.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제2호   | 200    | 400   | 1,000    |
| 라.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제3호   | 200    | 400   | 1,000    |
| 마.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하거나 고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제4호   | 200    | 400   | 1,000    |
| 바.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거래 상대방인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제5호   | 200    | 400   | 1,000    |
| 사. 법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제5호의2 | 200    | 400   | 1,000    |
| 아.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3항제6호의2 | 400    | 1,000 | 2,000    |
| 자.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제5호의3 | 200    | 400   | 1,000    |

|                                                                                  |                |       |       |       |
|----------------------------------------------------------------------------------|----------------|-------|-------|-------|
| 차.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제5호의4 | 200   | 400   | 1,000 |
| 카.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만이나 소비자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제5호의5 | 200   | 400   | 1,000 |
| 타. 법 제20조의3제1호가목을 위반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제6호   | 200   | 400   | 1,000 |
| 파. 제2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 간 거래에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제6호의2 | 200   | 400   | 1,000 |
| 하.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제6호의3 | 200   | 400   | 1,000 |
| 거. 제2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제6호의4 | 200   | 400   | 1,000 |
| 너.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3항제1호의2 | 400   | 1,000 | 2,000 |
| 더. 제2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 법 제45조제3항제1호의3 | 400   | 1,000 | 2,000 |
| 리. 제2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3항제1호의4 | 400   | 1,000 | 2,000 |
| 머. 제20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45조제3항제1호의5 | 400   | 1,000 | 2,000 |
| 버.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5조제3항제2호   | 1,000 | 1,600 | 2,000 |
| 서.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5조제4항제7호   | 200   | 400   | 1,000 |
| 어. 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제8호   | 200   | 400   | 1,000 |
| 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3항제3호   | 400   | 1,000 | 2,000 |
| 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                                                        | 법 제45조제        | 400   | 1,000 | 2,000 |

|                                                                                |              |       |       |        |
|--------------------------------------------------------------------------------|--------------|-------|-------|--------|
| 매업자로서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3항제4호        |       |       |        |
| 커.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법 제45조제3항제5호 | 400   | 1,000 | 2,000  |
| 터.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법 제45조제3항제6호 | 400   | 1,000 | 2,000  |
| 퍼. 법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 법 제45조제1항    | 5,000 | 8,000 | 10,000 |
| 허. 법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3항제7호 | 400   | 1,000 | 2,000  |
| 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5항    | 50    | 70    | 100    |

## 부 칙

이 영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4의 개정규정, [별표 1]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2.의 터부터 고까지의 개정 규정,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2.의 너부터 머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7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예외적 적용) 법 제6조 제2항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예외적 적용) -----<br>----- 「개인정보 보호법」<br>-----<br>-----<br>-----<br>-----<br>-----.                    |
| 1. 삭    제                                                                                                                                                                                  | 1. (현행과 같음)                                                                                                               |
| 2. · 3. (생    략)                                                                                                                                                                           | 2. · 3. (현행과 같음)                                                                                                          |
| 제17조(영업의 휴업 · 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의 신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그营业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营业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미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 제17조(영업의 휴업 · 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의 신고) -----<br>-----<br>-----<br>-----<br>-----<br>-----<br>-----<br>-----<br>-----<br>----- |

종전의 신고증 또는 사유서(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 제공)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같음하여 사업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1. 2. (생략)

----- 신고증을 첨부하되,  
신고증-----  
 -----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

제25조(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 제공) -----

----- 신원정보”란-----

-----  
 1.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0조제2항에서 “성명 ·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1.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

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

한 신원정보

2. 해당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

공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신 설>

② <삭 제>

제25조의3(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법 제20조의4제1항에서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란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3호의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주소는 제외한다.

1.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

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

<신 설>

한 신원정보

2. 해당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  
공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  
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기  
관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제25조의4(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전체 매  
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 평균 100만  
명 이상인 자

<신 설>

<신 설>

3. 이 법을 위반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  
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  
항제3호에 따라 보고를 하  
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  
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  
는 지체없이 법 제20조의5제3  
항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  
의 첫 화면에 공개하여야 한

<신 설>

<신 설>

다.

④ 법 제20조의5제6항에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매출액

2. 소비자 규모

3. 법 제20조의5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일반 현황, 주  
주 및 임원 구성, 해당 법인  
이 수행하는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 업무

4. 그 밖에 국내대리인을 지정  
하여야 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

제27조의3(사용후기의 수집·처리  
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  
등)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21조  
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신 설>

제34조의2(임시중지명령의 방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

사용후기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알려야한다. 다만,  
해당 첫 화면에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 첫 화면과 직접 연결  
되는 화면에서 알릴 수 있다.

1. 작성 권한이 있는 자
2. 게시기간
3.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  
른 효과
4.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  
기 절차

제34조의2(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  
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의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업무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  
비자원에 위탁한다.

제34조의3(임시중지명령의 방법  
등) ① -----

32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기 전까지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32조의4-----  
-----  
-----  
-----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해당 행위의 중지, 전자상거래 또는 -----  
----- 일부의 일시 중지 (이하 “임시중지”라 한다)를 ---  
-----.

② 법 제3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해당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취하는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1.~3. (생략)

제34조의3(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1.~5. (생략)

②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관·단체가 같은 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려면 다음 각

2. 기존 판례나 심결례(審決例)에

비추어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금지행위 유형과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하다고 명백하게 판단되는 경우

③ 법 제32조의4-----

-----  
-----  
-----  
-----  
-----  
-----.

1.~3. (현행과 같음)

제34조의4(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① 법 제32조의4-----  
-----  
-----  
-----  
-----.

1.~5.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2조의4-----  
-----  
----- 임시중지-----  
-----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내용

4.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는 사유

제34조의4(임시중지명령에 대한이의제기)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제기 대상·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1. (생략)

2. 개별기준

-----  
-----.

1.2. (생략)

3. 임시중지-----

-----

-----

4. 임시중지-----

-----

제34조의5(임시중지명령에 대한이의제기) 법 제32조의4-----

-----

-----

-----

-----

-----

-----.

[별표 1]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위반행위                                       | 근거<br>법조문     | 영업정지 처분 내용  |             |              |
|--------------|--------------------------------------------|---------------|-------------|-------------|--------------|
|              |                                            |               | 1차          | 2차          | 3차           |
| 가. ~ 처. (생략) | 가. ~ 처. (현행과 같음)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 <신 설>        | 커. 법 제20조의4를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br>제4항 | 영업정지<br>3개월 | 영업정지<br>6개월 | 영업정지<br>12개월 |
| <신 설>        | 터.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br>제4항 | 영업정지<br>3개월 | 영업정지<br>6개월 | 영업정지<br>12개월 |

|                                                       |                                                                   |            |          |          |           |
|-------------------------------------------------------|-------------------------------------------------------------------|------------|----------|----------|-----------|
| <신 설>                                                 | 퍼. 제2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 법 제32조 제4항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신 설>                                                 | 허. 제2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 제4항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신 설>                                                 | 고. 제20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 제4항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커.~터. (생략)                                            | 노.~도. (현행과 같음)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 <신 설>                                                 | 로. 제21조의4제1항 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 제4항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피.~초. (생략)                                            | 모.~누. (현행과 같음)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 코. 법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두. 법 제34조의4제2항<br>-----<br>-----<br>-----<br>-----<br>-----<br>--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1. 과징금의 산정기준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1. 과징금의 산정기준

나. 소비자피해의 정도 등에 따

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소  
비자피해의 정도 및 같은 항 제  
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에  
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별표 3]

1. (생략)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
| 가.~사. (생략) |
| <신설>       |
| <신설>       |

나. (현행과 같음)

-----  
-----  
-----  
-----  
----- 100분의 100 -----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사. (현행과 같음)                                                           | (생략)               | 2배<br>상향 | 2배<br>상향 | 2배<br>상향 |
| 아. 제18조제2항을 위<br>반하여 재화등의 대<br>금을 환급하지 않은<br>경우                          | 법 제45조제<br>3항제6호의2 | 400      | 1,000    | 2,000    |
| 자. 제20조제1항을 위<br>반하여 통신판매의<br>당사자가 아니라는<br>사실을 소비자에게<br>미리 고지하지 않은<br>경우 | 법 제45조제<br>4항제5호의3 | 200      | 400      | 1,000    |

|         |                                                              |                |     |       |       |
|---------|--------------------------------------------------------------|----------------|-----|-------|-------|
| <신설>    | 차.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제5호의4 | 200 | 400   | 1,000 |
| <신설>    | 카.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만이나 소비자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제5호의5 | 200 | 400   | 1,000 |
| 아. (생략) | 타.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200 | 400   | 1,000 |
| <신설>    | 파. 제2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 간 거래에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제6호의2 | 200 | 400   | 1,000 |
| <신설>    | 하.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제6호의3 | 200 | 400   | 1,000 |
| <신설>    | 거. 제2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제6호의4 | 200 | 400   | 1,000 |
| <신설>    | 너.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3항제1호의2 | 400 | 1,000 | 2,000 |
| <신설>    | 더. 제2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 법 제45조제3항제1호의3 | 400 | 1,000 | 2,000 |
| <신설>    | 러. 제2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3항제1호의4 | 400 | 1,000 | 2,000 |
| <신설>    | 머. 제20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 법 제45조제3항제1호의5 | 400 | 1,000 | 2,000 |

|                                                      |                                                                             |                          |             |             |              |
|------------------------------------------------------|-----------------------------------------------------------------------------|--------------------------|-------------|-------------|--------------|
|                                                      | <u>자료를 제출한 경우</u>                                                           |                          |             |             |              |
| <u>자.~차.</u> (생략)                                    | <u>버.~서.</u>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2배<br>상향    | 2배<br>상향    | 2배<br>상향     |
| <u>&lt;신설&gt;</u>                                    | <u>어. 제21조의4제1항을<br/>위반하여 사용후기의<br/>수집 및 처리에 관한<br/>정보를 공개하지 않<br/>은 경우</u> | <u>법 제45조제<br/>4항제8호</u> | <u>200</u>  | <u>400</u>  | <u>1,000</u> |
| <u>카.~하.</u> (생략)                                    | <u>저.~터.</u>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2배<br>상향    | 2배<br>상향    | 2배<br>상향     |
| <u>거. 법 제32조의2<br/>제1항을 위반<br/>하여 영업을<br/>계속한 경우</u> | <u>피. 법 제32조의4제1항<br/>-----</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br>같음) | (현행과<br>같음) | (현행과<br>같음)  |
| <u>너. 법 제32조의2<br/>제2항을 위반<br/>하여---</u>             | <u>허. 법 제32조의4제2항<br/>-----</u>                                             | (현행과 같음)                 | 2배<br>상향    | 2배<br>상향    | 2배<br>상향     |
| <u>더.~버.</u> (생략)                                    | <u>고.~로.</u> (현행과 같음)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                  |
| 연 락 처            | (044) 200 - 4449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                  |
| 연 락 처 | (044) 200 - 4449 |